이천시'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o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. 제1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 관리계획 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o 이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
. 제1항 :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. 檢 討 意 見

o 본 동의안은 이천군이 1996년 3월 1일 이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읍이 3개동으로 분동되어 중리동사무소 신축 대지면적 660㎡ 추정가액 5억 6천 520만원과 이천시청 독신자 공무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독신자 숙소 신축 대지면적 550㎡ 추정가액 4억 150만원 건축비이며, 중리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신축부지내 기존 건물2동을 철거하는 사항으로서 경로당 건물 면적 56㎡ 평가액 319만 2천원, 관측소 건물 면적 69.12㎡ 평가액 393만 9천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·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'96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